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희수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7
----------	-----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 의 자 : 김희수·신호광·서석영
정근수·최덕규·이충원
김재준·노성환·김용현
박규탁·박승직·윤종호
김경숙·황두영·정한석
박용선·박채아·김대일
김홍구·김대진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치유, 교육, 사업지원 등 사회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개정
- 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구성, 사업지원 및 위탁(안 제7조~제9조)
- 마. 공공기관 우선 구매(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예산입법담당관): 검토 완료

§예산입법담당관-14(2025. 1. 3.)

나. 규제심사(경상북도 민자활성화과): 규제사무 없음

§경상북도 정책기획관-16580(2024. 12. 31.)

다. 부패영향평가(경상북도 감사관): 부패유발요인 없음

§경상북도 정책기획관-16580(2024. 12. 31.)

라. 해당부서 의견(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검토 완료

§경상북도 정책기획관-16580(2024. 12. 31.)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을 “경상북도민”으로, “사회적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사회적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적농업의”를 “사회적 농업의”로, “사회적농업 기본 계획”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사회적농업”을 각각 “사회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사회적 농업 활성화”로, “사회적 농업의”를 “사회적 농업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를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적농업의”를 “사회적 농업의”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를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사회적농업”을 각각 “사회적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적농업”을 각각 “사회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를 “사회적 농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적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을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적농장에 대한”을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사회적농장”을 각각 “사회적 농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사회적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한다.

-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 6.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조) 중 “사회적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 농업 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등이 사회적 농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사회적농업</u>”이란 <u>농업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u></p> <p>2. “<u>취약계층</u>”이란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경상북도민</u> ----- ----- ----- <u>사회적 농업</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1. 삭제</p> <p>2. 삭제</p>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사회적 농업 -----

-----.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 사회적 농업의 -----
-----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
---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
-----.

1. 사회적 농업 -----

2. 사회적 농업 -----

3. 사회적 농업 -----

4. 사회적 농업 -----

5. ----- 사회적 농업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회적농업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 사회적농업의 -----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농업 -----

3. 사회적농업 -----

4. 사회적농업 -----

-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사회적농업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4.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생략)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사회적 농업 -----

6. ----- 사회적 농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적 농업 -----

- 1. 사회적 농업 -----

- 2. 사회적 농업 관련 -----

- 3.·4. (현행과 같음)

③ -----

----- 사회적 농업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지원) ----- 사회적농업-----
----- 예산-----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신 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

4. 사회적 농장-----

5. 사회적 농장-----

6.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7. ----- 사회적 농업-----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 사회적 농업

-----.

제10조(공공기관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 농업 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등이 사회적 농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일자리·소득 관련 서비스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의 위탁), 제10조(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11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농업대전환과 지방농업주사 박세은 (054-880-3316)



경 상 북 도



수신 농업대전환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농업대전환과-9174(2024.12.24.)호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조정, 위탁근거 신설 등 사회적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지원(제8조), 사업의 위탁(제9조) 등 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근거의 임의적 성격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열거되어 있을 뿐, 비용추계에 필요한 지원 금액, 범위,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시 향후 재정부담이 예측되는 바,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의

주무관	윤중모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4. 12. 30.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6743	(2024. 12. 30.)	접수	농업대전환과-9407	(2024. 12. 3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도"